

2009. 12. 18(금) 10:00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11. 12
- 제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9. 11. 16
- 상정·의결일자 : 2009. 12. 10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9 - 51호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2010년도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나. 운용방침

- 자금운용체계의 이원화(총괄, 운영부서)로 책임, 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기획감사실, 운용부서(각 기금관리 운용 실.과))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9년말 현재액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말 현 재 액 ④=①+②-③	증감
		수 입②	지 출③		
재난관리기금	767,237	471,298	430,000	808,535	41,298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2010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10년도 기금운용(구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767,23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40,218천원, 이자수입 31,08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자동경보장치수량국 설치 430,000천원임.

○ 법정 적립금 확보,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수정내역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변동조서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